

미래의 사회적 지원체계로서의 공유공간과 커뮤니티센터

김 미 희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주거학 전공)

1. 들어가는 말

한국사회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사회구조와 제도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에서도 매우 빠른 변화가 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6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되어 온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받은 결과이다. 산업화는 생활의 편의를 증대시켰으나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편의주의만을 추구하는 풍토가 조성됨과 동시에 개인주의적 성향도 강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공동체 중심의 생활보다는 개인중심으로, 일 중심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사적 자유를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최근 들어 두드러진 현상이다(손승영,1995).

오늘날 사회공동체 의식은 약하고 세대간의 사고방식의 격차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대가족이 해체되고 있는 현상으로 인해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환경문제등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집약되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갈 기반이 되는 지역공동체는 점점 해체되어 가고 주민의 삶도 점점 개인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환경이 디자인된 방법에 있어서 그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제적 건설의 효율성과 생활의 편리성에 입각한 20세기 환경디자인은 증대되는 도시자극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인간관계를 해체시키고 격리시켰으며 소원하게 함으로써, 익명성과 무관심한 사회분위기를 조장하고 우리의 환경을 비방어적으로 변모시켰다(엔도아스히로, 1997). 오늘날 획일화되고 대량생산되어 전국에서 보급된 아파트 단지는 핵가족을 대상으로 한 단위평면의 집합체로만 만들어져 이웃간의 교류를 원활치 못하게 하고 세대간의 이해와 교류를 어렵게 했다. 또한 가족의 생활에 편리함을 주었으나 확대가족을 원활히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가족간의 갈등을 조장하였고 노인거주문제를 악화시켰으며, 아동의 사회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여성과 청소년, 노인의 여가문화를 생성시키는 기회를 막아버렸다(이연숙, 2000).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21세기 주거환경디자인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는 동시에 가족

구성원간, 이웃간, 주민간, 시민간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증진시켜 주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이며(엔도아스히로, 1997), 이는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주거평면의 변화, 이웃간의 생활과 정서를 교류할 수 있는 동네 또는 주거단지 계획을 통하여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한편, 경제성장을 통하여 얻어진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정신적인 안정의 추구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켰으며 이는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능동적인 문화의 형태로 바뀌어 점차적으로 각 계층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요구 및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물의 확보가 지역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공간의 형성 및 커뮤니티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의 공유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미래에 가정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2. 사회적 지원체계로서의 공유공간

공유공간은 동네나 아파트 주거단지내에서 주민들의 생활복지에서 문화향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을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주민공동공간으로 주민들이 사용권, 소유권, 영역권을 가지는 반공적, 반사적 영역의 개념이다. 이는 각 세대의 단위주택 이외에 별도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질적인 시설과 서비스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이 전제된다. 공유공간은 주민들이 일상생활권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하며 현재의 복지시설과는 달리 소생활권 내의 주거단지 혹은 주거지역 단위별로 다양한 기능의 공간들이 커뮤니티센터라는 이름으로 모여 제공 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공유공간은 미래사회에 급격히 늘어날 복지요구를 수용해주고 사회복지와 서비스를 전달하고, 지역주민문화를 육성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고, 정보화사회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한 단위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폐쇄적이고 고정적인 단위평면 위주의 주거환경에 유연성을 부여하며,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이연숙, 2000). 따라서 지역사회의 생활복지와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인 것이다.

주민의 생활복지를 위하여 앞으로 포함할 수 있는 공유공간에 포함될 수 있는 공간유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단위주택 내에서 이루어지던 생활을 공간절약 차원에서 이웃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소규모작업장, 공동세탁실, 공동창고, 다목적 행사실,

손님숙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이웃공동체육성을 위한 공간으로 결혼식장, 장례식장, 다목적 행사실 등이 있다. 셋째, 여가행태를 수용하는 공간으로 수영장, 체력단련실, 탁구장, 문화센터, 실내골프장, 노인복지회관등 근접성 개념이 중요한 시설이다. 넷째, 생활에 편리를 가져다주는 서비스 지향적 영리공간으로 상가, 병원, 세탁소, 은행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섯째, 현대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이고, 가족해체현상으로 인해 점차 사회문제화되어가는 노인, 청소년, 탁아, 여성문제등을 경감시키는 공간으로 탁아시설, 노인복지회관, 청소년문화회관, 부녀복지회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모든 공간들이 하나의 유형에만 속하는 것은 아니다(이연숙, 2000).

3. 공유공간확보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

1) 법제화의 필요성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다양한 활동을 해야하며 이를 위한 공간이나 시설을 필요로 한다. 개인별로 은밀하게 가져야 할 사적인 사유공간이 있는가 하면 모두가 더불어 사용해야 할 공공적인 공간과 시설이 있으며 그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양하다.

공간의 성격상 공유공간은 공공공간과 사유공간의 중간적 특성을 띠고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관리하는 半公적, 半私적인 공간으로서 공공공간과 사유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가교적 역할을 한다. 이를 설치,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양보와 질서,규범 등이 요구되지만, 많은 사람이 사유공간에 대해서는 강한 집착과 이기심을 가지지만 공유공간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인색한 경향을 보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자발적인 합의와 참여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나 단지, 그리고 동네 등은 단순한 주택이나 개별건물의 집합에 의해서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여러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과 시설이 조직화되고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유공간이나 시설에 대한 기준마련과 함께 최소한의 설치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야만 할 것이다.

2) 법규현황 및 법제적 개선방안

(1) 공유공간의 법제 현황:공유공간에 대한 법규는 여러 관련된 규정에 분산되어 있고 종합적이

고 유기적인 체계를 가지지 못하며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내용이 미비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 (2) 기성시가지에서 공유공간의 확보: 신개발지나 아파트단지에서는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공영개발에 의해 기존의 주택건설촉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공유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계획적 개발이나 법적 규제가 되지 못한 기성시가지에서는 공유공간 확보가 쉽지 않다.

개별 필지 단위가 모여 시가지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나 공공시설의 활용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에는 공유공간 조성이나 설치가 공공 투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편 기존의 시설인 동사무소를 주민의 문화활동장소로 전환하거나, 학교나 문화회관, 복지회관, 어린이집, 도서관, 체육센터 등 지역사회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적절한 운영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이 친밀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공유공간이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새로운 공유공간의 조성 및 설치를 계획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생활권 구성에 따라 시설을 위계적으로 구성하고 주민들이 쉽게 근접할 수 있는 곳에 소규모 공유공간을 마련하여 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조직화 한다. 따라서 주택지 곳곳에 찜치마당 같은 빈터가 때로는 어린이 놀이터로 때로는 동네의 이웃들이 함께 모이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공유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3) 법제화 방안: 공유공간에 대한 법제화는 불가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제화 이전에 개발주체와 사용자, 공공과 민간이 상호이해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강제적 규제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 유인책의 시행: 공유공간 설치에 따른 규정을 완화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하며 민원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세제감면, 금융지원 및 행정지원이 가능하다.

* 강제적 법규정: 법규정은 강제적 시행방법이므로 최소규정일 뿐 아니라 거의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다.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관련규정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현행 규정에 활용되지 못한 여러 지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다(예, 아파트심의기준에서 계량화가 가능한 지표적 심의기준과 계량화가 어려운 유도적 심의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최찬환, 2000).

4. 사회적 지원체계로서의 커뮤니티 센터의 활용

커뮤니티는 늘 “좋은 사회” ‘좋은 삶’의 대명사로 쓰여왔는데 그것은 커뮤니티가 그만큼 인간화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삶의 질을 높여주기 때문이다(송복, 1995). 커뮤니티는 주택, 주민, 그리고 지역 사회로 구성되어, 지역 주민들과의 상호접촉을 통해 아이덴티티를 형성해가는 공동체이다. 따라서 이웃과의 교제와 지역사회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커뮤니티 발전의 전제가 된다.

기존의 커뮤니티 디자인은 물리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을 충분히 고려 하지 못했다. 따라서 미래의 커뮤니티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이웃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미래에는 혈연관계가 약화 될 것에 대비하여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서 공동체의 약화는 인간적 유대관계의 상실과 고립감을 유발하고, 익명성의 강화됨으로써 새로운 사회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김정호, 1998).

또한 단지계획적 관점에서 시설형 공유공간은 현재 다양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부대복리시설의 규정을 철폐하고, 시설형 공유공간 중에서 커뮤니티 센터 등 주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설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강병근, 2000).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인 시설공간만으로 공동체적 삶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커뮤니티시설의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관리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에 이러한 국민들의 다양화된 생활복지욕구에 대응하고 기존의 커뮤니티 관련시설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통합적인 커뮤니티 센터의 구축 통해 행정, 건강, 여가, 문화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프로그램이 제안되었다(새천년준비위원회, 2000). 이에 의하면 커뮤니티의 핵심기능을 관리·행정기능, 정보·상담기능, 건강·운동기능, 여가·문화기능, 보육·교육기능의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고 그 기능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대상, 종류, 규모, 배치등이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5. 나오는 말

앞으로의 주거문화는 개인의 삶 뿐 만아니라 지역사회를 통해 ‘우리’라는 공동체를 지원하고 유지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미래의 주거공간은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생활

공간을 공유화하고 생활서비스와 주민복지의 인프라구축으로서의 커뮤니티센터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계획되고 디자인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커뮤니티센터는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미래에 사회적 지원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공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라는 시설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공유공간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기존의 동네나 주거단지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공간계획적 접근과 동시에 새로운 주거단지계획시 커뮤니티 센터나 주민공유공간에 대한 설치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설치를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법제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커뮤니티센터라는 시설 공간을 운영하는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다. 커뮤니티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관해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세분화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책임의 주체를 결정하여 유지관리측면에서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커뮤니티센터마다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담당케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병근 (2000), “단지계획 관점에서 본 공유공간의 효용성”, 밀레니엄 커뮤니티 센터, 밀레니엄 커뮤니티 센터 연구회 편, 연세대학교 출판부.
- 김정호 (1998),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커뮤니티 디자인”, 이연숙 편, 삶의 질과 환경디자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새천년 준비위원회 (2000), 뉴 밀레니엄 커뮤니티 센터 모델 개발, 새천년 준비위원회.
- 엔도 야스히로 저, 김찬호 역 (1997), 이런 마을에서 살고 싶다, 황금가지
- 이연숙 (2000), “공유공간의 필요성”, 밀레니엄 커뮤니티 센터, 밀레니엄 커뮤니티 센터 연구회 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손승영 (1995), “여성, 청소년,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센터의 중요성과 미래주택단지를 통한 육성방안”, 21세기 공동체 생활문화육성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송 복 (1995), “21세기 사회와 공동체 생활문화”, 21세기 공동체 생활문화육성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최찬환(2000), “공유공간 구축을 위한 법제적 고찰”, 밀레니엄 커뮤니티 센터, 밀레니엄 커뮤니티 센터 연구회 편, 연세대학교 출판부.